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 인도: 이전가격 관련 비대면 감사 시스템 도입 및 향후 예상되는 규정

최근 인도의 감사 시스템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들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정부는 공격적인 조세 관할권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납세자 및 투자자 친화적인 체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 세무당국은 "Faceless Assessment Scheme"(이하, "비대면 평가제도")을 도입함으로써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세금 시스템 전체를 원활하고 단순한 비대면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2020년 8월 비대면 평가제도를 포함하는 주요 개혁안으로 "Transparent Taxation – Honoring the Honest" 플랫폼을 도입하였습니다. 인도 세무당국은 2015년 소규모 비대면 평가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해당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공과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삼정 KPMG

TAX 6 본부

7 June 2021

####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약 68%의 인력을 해당 프로그램에 새롭게 배치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인도 내 감사 수행방식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대면 평가제도는 전적으로 디지털 통신을 통해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제거하며, 이에 따라 납세자는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비대면 평가제도는 효율성 제고와 같은 명백한 이점이 있는 한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관과 직접 대화할 수 없는 등의 잠재적인 단점 또한 많아 심사 대상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비대면 평가제도에 따른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관련 사실관계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요구된 기간 내에 세무당국에 응답하지 않을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평가제도는 범죄와 관련된 조사를 제외한 모든 납세자(거주자)와 관련 세금 문제를 다룹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를 포함한 인도 법인들은 새로운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거주 납세자 및 범죄 관련 조사는 기존 방식으로 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해당 감사 범위에 이전가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가격 감사를 위한 비대면 평가제도 적용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인도 세무당국은 비대면 이전가격 감사에 대한 별도 지침을 발표하고, 늦어도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호주: 호주 과세당국(ATO), 무형자산 약정 관련 실무적 규정 지침(안) 발표

호주 과세당국(Australian Taxation Office, 이하 "ATO")은 지난 5월 19일, 납세자의 무형자산 약정 관련 위험 평가를 돕기 위해 실무적 규정 지침(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PCG 2021/D4")(안)을 발표했습니다.

실무적 규정 지침(안)은 호주 내에서 수행되는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 (DEMPE) 활동을 왜곡하는 무형자산 약정을 식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자산 라이선스, 연구개발 활동, 원가분담약정 및 무형자산 이전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다루고 있으며,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조세회피 방지, 우회이익세 등과 같이 무형자산 약정과 관련이 있는 기타 조세 위험도 다루고 있습니다.

###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ATO는 다음의 두가지 구성 요소를 조합하여 위험 평가 이행체계(framework)를 구축합니다.

- **위험 요인** - 위험 평가에 사용되는 약정의 예시 및 특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제공
- **문서화 및 증빙 요건** - 위험 요인에 대한 무형자산 약정을 평가할 때 ATO가 검토할 증빙의 수준 설정

기초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적 고려사항 및 의사 결정
- 무형자산 약정의 법적 형식에 대한 이해
- 무형자산 및 관련 DEMPE 활동 분석 및 입증
- 세금 및 이익 분석

이러한 위험 요인은 근거자료에 대한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적 규정 지침(안)은 ATO가 검토할 증빙 유형 및 문서화에 대한 광범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증빙 및 문서화 수준은 이전가격보고서의 일부로 작성되는 일반적인 내용을 훨씬 능가합니다. ATO는 무형자산 약정의 복잡성이 납세자가 구비해야 하는 문서화 수준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ATO가 문서화 및 증빙 요건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위험 요인은 ATO가 위험이 '높음', '중간' 및 '낮음'으로 평가하는 12 가지 약정의 사례를 제시하며, 새로운 사례가 발견될 때 마다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위험도가 '높음'으로 평가되는 무형자산의 예로는 무형자산 및 DEMPE의 이전, 분리 및 미인식이 포함되며, 특히 DEMPE 활동이 호주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약정 체결을 위한 상업적 근거와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업적 옵션 등에 중점을 둡니다. 각 사례에는 ATO가 무형자산 약정 평가 시 요청 및 검토할 증빙의 종류에 대한 예시도 포함됩니다.

ATO는 위험도가 '낮음'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과 같이 거래의 실질이 명확하고 해외법인이 호주 소재 R&D 용역제공법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강력한 문서화, 증빙 및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ATO는 많은 납세자들에게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대한 사례도 제공합니다.

ATO는 납세자의 무형자산 약정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검토하고 위험요인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KPMG 견해**

ATO의 실무적 규정 지침(안)의 발표에 따라 납세자들은 무형자산 약정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무형자산 약정에 대한 자체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관련 내용을 세무 신고 시 또는 ATO의 규정준수 검토 절차의 일부분으로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실무적 규정 지침(안)이 이대로 확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위험 평가 이행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와 분석자료를 수집/준비하는데 상당한 규정준수(compliance)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규정준수 부담은 중요성 기준(materiality threshold)이 없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납세자는 위험도가 '높음'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실무적 규정 지침(안)이 이전가격, 조세회피 방지, 문서화 및 증빙 요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포함하므로 광범위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2. 관세 Update**

###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지난 2021년 6월 3일 관세청(청장 임채현)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선복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운임 급등 등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먼저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환적화물과 관련하여 화물 이동경로 단축, 화물터미널(특허보세창고) 반출입 신고절차 생략, 창고비용 경감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환적화물 처리 지원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화물 일시 대기장소(Cargo Transit Area, CTA)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 행정제재 완화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운임 급등 및 선복 예약 어려움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더 나아가 적재기한(수출신고 수리 후 30일)이 다가오는 업체에게 적재기한 도래 사실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행정제재(오류 점수 등)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지정과 같은 추가 불이익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 세정지원 강화

더불어 관세청은 수입기업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①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②분할납부 대상기업과 ③한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실행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세 납부기한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수입신고 수리 후 최장 1년
분할납부	대상기업	성실 중소·중견기업
	한도	전년도 납부세액 50% 범위
		성실기업
		한도 폐지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는 한편, 관세조사는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수출이행기간	2년	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국내거래기간	1년	1년 6개월

위와 같은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 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총 6개 세관에 운영하고, 향후에도 수출입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환적화물처리장소(CTA) 지정 및 관세조사 유예는 올해 하반기 시행

### 3. 국제조세, OECD Update

**국제조세 최신 예규/판례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제목

한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산업상·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1) 사실관계

① 원고(독일법인)와 한국법인은 2009. 1. 1. 한국법인이 원고에게 '응용 연구개발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Appli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및 '지급실시권 허여 합의(License Agreement)'가 포함된 응용 연구개발 용역 및 실시권 계약(이하 '이 사건계약'이라 하고, 그 중 위 '응용 연구개발에 관한 합의'만을 가리켜 '이 사건 쟁점합의'라 한다)을 체결

② 한국법인은 이 사건 쟁점합의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음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 금원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피고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과세할 권한이 없다.

피고: 한국법인에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지적재산과 기술정보를 이용하게 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과세권한이 있다.

(3) 판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기본 연구개발이 시장의 잠재적인 수요를 기대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정보와 지적재산을 생성하는 것과 달리 응용 연구개발은 개별 소비자의 특정 주문 내지 수요에 맞추어 도면, 사양서, 매뉴얼, 소프트웨어, 원형(Prototype)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정보와 지적재산을 새롭게 생성하는 형태를 띤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이처럼 기본 연구개발과 응용 연구개발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며 계약의 대상을 구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의 산정 방식과 성격 역시 달리 정하고 있다.

③ 다수의 부품제조업체와 함께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부품 개발을 위한 업체로 최종 선정된 후 응용연구개발을 원고에게 맡기기도 하였는바, 연구개발이 특정회사만이 보유한 고유하고 특수한 노하우가 아닌 동종 업체들이 널리 보유하는 지식내지 기능에 의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④ 한국법인의 의리에 따라 원고 등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새롭게 개발한 결과물을 한국법인에 제공하였는 바, 그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은 이미 존재하던 기술정보의 이전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 등이 수행한 응용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는 대부분 인건비 등 실비변상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기본 연구개발 관련 라이선스 제공에 따른 대가는 총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⑥ 응용 연구개발의 이행과 결과에 관한 일정한 범위에서의 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증의무는 노하우 제공에 관한 계약보다는 인적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⑦ 소유권 귀속 여부는 노하우와 인적용역을 구분 짓는 결정적인 표지라고 보기 어렵다.

⑧ 쟁점합의 뿐 아니라 전형적인 노하우 제공에 관한 합의인 기본 연구개발에 관한 라이선스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결국 이는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정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일 뿐이다.

㉑ 결과물의 생성, 제공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수적인 기술정보의 노출을 예상하면서 한국법인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전형적인 노하우 제공계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